

행 정 자 치 부

통 보

제 목 민간기관의 임직원 파견근무 운영 부적정

기 관 명 강원도

관 계 기 관 강원도 본청

내 용

1. 민간기관 임직원 파견기간 연장 부적정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30조의4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,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, 다른 지방자치단체, 국가기관, 공공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(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,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), 국내외의 교육기관·연구기관,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고

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·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

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·단체의 임직원을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파견 사유·기간·절차와 파견기간 중의 복무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.

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27조의4에 따르면 민간기관의 임직원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,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

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⁵⁾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된 임직원을 해당 민간기관에 복귀시킬 수 있으며, 이 경우 파견된 사람이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.

강원도에서는 기업유치 및 경제정책 추진 등을 위하여 2010. 12. 1.자로 ○○○○(주) 소속 임직원 ○○○ 부장을 파견받아 2010. 12. 1.부터 2012. 11. 30.까지 2년간 ○○○○○○관으로 임용하였고

파견 만료기간이 도래하자 연장요청과 ○○○○(주)의 파견기간 연장요청에 대한 협의 및 인사위원회 심의·의결을 거쳐 2012. 12. 1.부터 2013. 11. 30.까지 1년의 범위에서 추가 연장하였으나

추가 연장한 파견기간이 2013. 11. 30.자 만료로 파견사유가 소멸됨에 따라 ○○○○(주)로 복귀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

도내 경제활성화를 위한 ○○○○와의 지속적인 정책협조 및 경제정책자문 등을 위하여 파견기간을 다시 추가하여 2회에 거쳐 각각 1년, 4년 등 총 5년간 부당하게 연장⁶⁾하였다.

2. 인사위원회 사전의결 없이 민간기관 임직원 파견근무 부적정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10조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의 심의·의결할 수 있으며

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9조의4에 따르면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

5) ① 파견사유가 소멸한 경우, ②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, ③ 파견된 임직원이 파견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

6) 추가 1회 : 2013. 12. 1.~2014. 11. 30.(1년) / 추가 2회 : 2014. 12. 1~2018. 11. 30.(4년)

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의 심의·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.

강원도에서는 도내 경제활성화, 기업유치 및 경제정책 추진 등을 위하여 2016. 1. 27.자로 ○○○○ 소속 임직원 ○○○ 부장을 파견받아 사전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심의·의결과정 없이 임용하였다.

3. 파견수당 지급 부적정

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제30조에 따르면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급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,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·지급범위·지급액 기타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

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8조의6 별표 14의 비고 2에 따르면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7)에 따라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.

강원도에서는 민간기관(○○○○, 주)에서 파견된 임직원 ○○○ 부장에 대하여 4급 상당 준국장급 수준의 ○○○○○○관 직위를 부여하면서 수당보전 차원에서 지급 불가한 파견수당을 2010. 12.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매월 300,000원씩 지급하였다.

또한, ○○○○에서 파견된 임직원 ○○○ 부장에 대해서도 4급 상당 준국장급 수준의 ○○○○○○관 직위를 부여하면서 수당보전 차원에서 지급 불가한 파견수당을 2016. 1. 27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매월 300,000원씩 지급하였다.

7) ①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서울사무소(투자유치기획단 등을 포함한다)에 근무하는 공무원 : 월 300,000원

②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4급·5급 공무원(월 200,000원), 6급 이하 공무원(월 100,000원), 기능직공무원(월 50,000원)

조치할 사항 강원도지사는

앞으로 민간기관의 임직원 파견근무를 운영할 경우에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 등을 준수하는 등 관련 업무 추진시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